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문화
협력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서울
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
습니다.

이에 안 제15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도시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지역문화의 진흥 및 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